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천대학교의 학칙과 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에 따라 산학협력단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은 부천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의 산학협력사업과 국책사업을 수행하는 부속기관과 부설연구소의 업무를 유기적이고 통합적으로 기획·조정함으로써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증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산학협력사업 및 국책사업의 통할
2. 산학협력사업 및 국책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원 및 조정
3. 산학협력사업 및 국책사업 기관의 행·재정 지원
4. 산학협력 계약체결 및 이행,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등의 업무 관리
5. 대학교의 교외연구비 지급 및 관리
6. 산학협력단 산하 부설연구기관 및 국책사업단 평가 및 지원
7. 산학연협력수요 및 활동 등에 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홍보
8. 산학연협력사업 및 관련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
9. 산업교육기관의 교원과 학생의 창업지원 및 기업가정신 함양 촉진 등에 관한 업무
10.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의 따른 협력연구소 간의 상호 협력 활동 지원
11. 정부 및 지자체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 및 유아교육 또는 보육에 대한 위탁관리사업
12. 그 밖에 해당 대학의 교지 안에 설치·운영되는 기업과 연구소 등에 대한 지원
13. 기타 각 호에 부수되는 사업

제2장 조 직

제4조(단장)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이나 부참여 이상의 자로 한다.

제5조(조직) ① 산학협력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산학협력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산학협력단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직원과 조교, 연구원 등을 둘 수 있으며, 단장은 대학교 총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산학협력단에는 산학협력팀, 연구지원팀, 재무팀,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등을 두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산학협력계약에 의해 산학협력 관련 부설연구기관(센터 및 연구소), 국책사업단 등의 조직을 둘 수 있다.

③ 산학협력단 산하에 학교기업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학교기업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6조(운영위원회) ① 산학협력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의 승인을 받아 8인 이내의 교직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된다.

③ 위원장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다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제7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학협력단 정관 및 운영규정 개·폐에 관한 사항
2. 산학협력단 운영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3. 단장이 대학교 및 산학협력단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학협력 및 국책사업의 계획 및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
4. 교외연구비, 간접연구경비, 학술연구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산학협력단 예·결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산학협력단 및 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제8조(소집 및 의결)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산학협력위원회

제9조(산학협력위원회) ① 산학협력단은 대학과 산업체 및 정부·지방자치단체, 타 연구 기관 등과 각종 유기적인 산·학·연·관 협동체제 구축 및 사업추진을 위한 협의 또는 각종 평가를 목적으로 사업 단위별 산학협력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산학협력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된다.
③ 산학협력위원회 위원은 산학협력단장을 포함하여 교내 전임교원과 직원, 사업에 참여하는 대외 각 기관의 관계자, 그 외 해당 사업의 운영에 자문 역할이 가능한 산·학·연·관 전문가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사항) 산학협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학·연·관 협동체제 구축에 필요한 기금조성 및 관리
2. 산·학·연·관 공동연구 촉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추진
3. 산·학·연·관 교육 및 취업지원 사업 구축
4. 산·학·연·관 사업추진에 대한 운영 및 예·결산에 관한 주요사항
5. 산·학·연·관 사업평가에 대한 사항
6. 기타 산·학·연·관 협력에 관한 주요사항

제5장 평가

제11조(산학협력 실적 등의 평가·반영) 총장과 단장은 교원이 산학협력에 참여한 실적과 그 성과가 당해 교원의 평가·승진·보수 등에 있어서 적정하게 평가·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을 근거한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2조(시행) 이 규정은 2012년 3월 20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을 근거한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2조(시행)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을 근거한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2조(시행) 이 규정은 2016년 4월 18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